

변경 대비 표

1. 변경 대상 펀드: 미래에셋배당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2. 효력발생 예정일: 2015년 5월 14일 (목)

3. 변경 사항:

- 1) 펀드 명칭 변경
- 2) 종류 신설 및 투자대상자산 변경

4. 변경 내용:

1) 펀드 명칭 변경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펀드 명칭	미래에셋배당주플러스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	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30증권투자신탁1호(채권혼합)

2) 종류 신설 및 투자대상자산 변경

[집합투자규약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<신설>	종류 C-e, C-P, C-Pe 수익증권 [아래 참조1]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<신설>	종류 C-e, C-P, C-Pe 수익증권
제17조(투자대상자산 등)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4. <생략></p> <p>5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이하 “<u>주식 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</u>”이라 한다)</p>	<p>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~4. <생략></p> <p>5.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(<u>다만, 위험회피목적</u>을 위한 거래에 한 한다). (이하 “<u>장내파생상품</u>”이라 한다)</p>
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로 한다. 다만, 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(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) 및 주식관련파생상품(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)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한다. 이 중 제17조 제1의2호에서 규정한 "고배당주"에의 투자는 80%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로 한다. 다만, 주식에의 투자는 장내파생상품(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)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한다. 이 중 제17조 제1의2호에서 규정한 "고배당주"에의 투자는 80% 이상으로 한다.</p>
<p>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</p> <p>1. ~3. <생략></p> <p>4.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5.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	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</p> <p>1. ~3. <생략></p> <p>4. 장내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 <p>5.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</p>
<p>제39조(보수)</p>	<p><신설></p>	<p>종류 C-e, C-P, C-Pe 수익증권 [아래 참조2]</p>
<p>제41조(환매수수료)</p>	<p><신설></p>	<p>[아래 참조3]</p>

[투자설명서]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<p>제 2 부.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</p>	<p>[종류형 구조] <신설></p>	<p>[종류형 구조] [아래 참조1, 2, 3]</p>

<p>제 2 부.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</p>	<p>1. 주식 투자비율: 30% 이하(단, 주식 및 <u>주 식관련</u> 장내파생상품 합산)</p> <p>8. 장내파생상품: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· <u>통화</u>나 주식·채권·<u>통화</u>의 가격, 이자 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 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(다만, <u>통화</u> <u>관련장내파생상품의 경우</u> 위험회피 목적에 위한 거래에 한한다.)</p>	<p>1. 주식 투자비율: 30% 이하(단, 주식 및 장 내파생상품 합산)</p> <p>8. 장내파생상품: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·채권 이나 주식·채권의 가격, 이자율, 지표,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(다만, 위험회피목적 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.)</p>
<p>제 2 부.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</p>	<p>(2) 종류별 가입자격 <신설></p>	<p>(2) 종류별 가입자격 <종류 C-e, C-P, C-Pe 수익증권> [아래 참조1]</p>
<p>제 2 부.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. 환매</p>	<p>(8) 환매수수료 <신설></p>	<p>(8) 환매수수료 <종류 C-e, C-P, C-Pe 수익증권> [아래 참조3]</p>
<p>제 2 부. 집합투자 기구에 관한 사항</p> <p>13. 보수 및 수수료 에 관한 사항</p>	<p><신설></p>	<p>< 종류 C-e, C-P, C-Pe 수익증권의 수수료 및 보수> [아래 참조 2 및 3]</p>

[참조 1] 가입자격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종류C-e	<신설>	온라인 가입자
종류C-P	<신설>	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
종류C-Pe	<신설>	소득세법 제20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 자자

[참조 2] 보수표(%)

종류명	운용	판매	신탁	사무
-----	----	----	----	----

종류C-e	0.45	0.42	0.025	0.01
종류C-P	0.45	0.76	0.025	0.01
종류C-Pe	0.45	0.38	0.025	0.01

[참조 3] 수수료

종류명	판매	환매
종류C-e	해당사항 없음	90일 미만 이익금의 70%
종류C-P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종류C-Pe	해당사항 없음	해당사항 없음

미래에셋자산운용(주)